

제14장 일반 협력

제14.1조 목적 및 범위

1.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혜택을 확대하고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국과 하나 이상의 관심이 있는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 간 협력을 위한 틀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당사국들은 다음 분야에서의 협력에 특별히 주목하여, 모든 형태의 협력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가. 정보통신기술

나. 시청각 서비스

다. 항공 서비스

라. 이 협정의 목적과 원칙의 이행에 기여하는 상용 방문

마. 과학 및 기술

바. 보건의료 산업

사. 산업 협력

아. 농림수산업

자. 에너지 및 자원

차. 건설 및 인프라 개발

카. 바이오경제, 그리고

타. 스마트팜

제14.2조

협력 형태

1. 당사국들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형태로 제14.1조제2항에 언급된 분야에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가. 경험 및 우수 관행 교환

나. 당사국들의 각 민간 부문 간 협력 증진

다. 소비자,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의 신생 서비스 이용 증진

라. 인적 자원 개발, 그리고

마. 그 밖의 적절한 협력 활동 수행

2. 당사국들은 공동위원회를 통하여 그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협력의 특정 분야 및 형태를 규정할 수 있다.

제14.3조

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

당사국들은 국내 및 국제적 맥락에서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영업 관행이 민간 부문의 주도로 급속하게 발전함을 인정하면서, 당사국들이 정보통신기술 이용의 혜택을 최대한 획득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비스의

발전을 증진하도록 협력한다.

제14.4조 상용방문 협력

당사국들은 각국 경제에서 상용 방문 교류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설립 전 방문을 포함하여 당사국들 간 그러한 방문과 교류를 증진한다.

제14.5조 건설 및 인프라 개발 협력

1. 당사국들은 각국 경제에서 건설 및 인프라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분야에서 협력 활동을 개발하고 증진할 수 있다.

2. 건설 및 인프라 개발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고속도로, 발전소, 공항 및 산업공장 건설

나. 인프라 개발

다. 도로 및 철도 인프라 개발, 그리고

라. 당사국들이 합의한 그 밖의 형태의 협력

3. 당사국들은 다음을 통하여 건설 및 인프라 개발 협력을 증진한다.

가. 새로운 기술 및 소재의 적용, 그리고

나. 당사국들이 합의한 그 밖의 활동

제14.6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이 협정의 제15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부속서 14-가
선진산업

1. 당사국들의 경제 개발에서 당사국들의 공공 및 민간 부문 간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한국과 하나 이상의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은 선진산업 분야에서 상호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보건의료 산업 및 융합의료기기를 포함한 생물학 산업

나. 항공우주산업

다. 인공지능(AI) 적용, 디지털 전환 및 이러닝(e-learning)

라. 정보기술(IT) 및 생명공학과 같은 선진기술

마. 스마트 기계 및 자율 제조와 같은 선진 제조

바. 스마트 공장, 기술 및 정책 분야를 포함한 4차 산업, 그리고

사. 공급망 관리

3. 산업 정책 분야에서 협력의 형태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새로운 산업 정책과 관련된 의제 확인

나. 산업 개발에서의 우수 관행 공유 및 교환

다. 합작사업의 이행, 기업 간(B2B) 및 기업 대 정부(B2G) 유대 강화 그리고 정부 간(G2G) 협업 증진

라. 공동 연구개발 및 스타트업 또는 합작투자의 공동 설립과 그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의 제공

마. 공동 산업 정책의 개발 증진, 그리고

바. 그 밖의 적절한 협력 활동 수행

부속서 14-나
에너지 및 자원

1. 당사국들은 각국 경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에너지 및 자원분야에서 더 강력하고, 더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에너지 사용에서 효율성 개선을 증진하는 것

나. 에너지 및 자원 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하는 것

다. 천연가스, 수소 및 바이오에너지와 같은,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대체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이용에 대하여 협력하는 것

라. 에너지 및 자원에서의 투자와 신기술 적용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마. 에너지 및 자원의 공동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

3.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서의 협력 형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 관여하는 자국 정부기관,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및 기업을 통하여 당사국들의 공공 및 민간 부문 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

나. 연구자, 기술자 및 그 밖의 전문가의 방문과 교류를 촉진하고 공동 포럼, 세미나, 심포지엄, 콘퍼런스, 전시회 및 연구 프로젝트를 증진하는 것

다. 투자를 포함하여 사업 기회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

라. 우수 관행과 정책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마. 그 밖의 적절한 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것

부속서 14-다
시청각 서비스와 공동제작

시청각 서비스

1. 당사국들은 서로 다른 수단을 통하여, 특히 훈련, 정보교환, 전문성 및 경험 교류, 그리고 기술과 노하우의 활용과 이전 분야에서 지원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2. 당사국들은 시청각 분야의 발전을 장려할 목적으로 기술 지원과 시청각 분야와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교류를 촉진할 기회 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시청각 서비스에 대한 협력은 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된다.

시청각 공동제작

4. 당사국들은 영화, 애니메이션 및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영역에서의 시청각 공동제작이 당사국들 간 시청각 산업의 발전과 문화적 및 경제적 교류, 그리고 이해 증대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의 협상을 장려하기로 합의한다.
5. 제4항에 따른 공동제작협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되며, 오로지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
6. 제4항에 언급된 공동제작협정을 준수하는 공동제작 사업은 각 당사국 영역에서 국내 제작물로 간주되며 따라서 각 당사국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정부 지원을 포함한 모든 혜택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부여받는다.

부속서 14-라
바이오경제

1. 당사국들은 당사국들의 공공 및 민간 부문 간 바이오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바이오경제 분야에서 상호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다.
2. 바이오경제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가. 바이오의약품
 - 나. 바이오화학 및 바이오에너지
 - 다. 바이오환경 및 바이오의료기기
 - 라. 바이오장비
 - 마. 바이오기기, 그리고
 - 바. 바이오자원
3. 당사국들은 다음을 통하여 바이오경제에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
 - 가. 훈련 커리큘럼, 방법론 및 자료의 개발에 대한 협업
 - 나. 바이오경제 분야에서 인력 훈련 및 교환 프로그램, 그리고
 - 다. 당사국들이 합의한 그 밖의 형태의 협력
4. 당사국들은 바이오경제 분야의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국의 법과 규정을 공표함으로써 당사국들의 바이오경제 분야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하고 자의적이며 부당한 제한 또는 장애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부속서 14-마
스마트팜

1. 한국과 하나 이상의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은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더 강력하고 더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장에 따른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

2. 제1항에 언급된 당사국들은 다음 분야에서 협력을 지원하고 촉진하며 증진할 수 있다.

가. 스마트 농업 관련 도전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연구

나.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당사국들의 민간 부문 내 협업을 위한 기회 증대

다. 스마트 농업 관련 훈련 수행

라. 당사국들의 상호 관심 분야에서 프로젝트 공동 마련, 그리고

마. 당사국들이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 분야

부속서 14-바
보건의료 산업

1. 한국과 하나 이상의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은 상호 이익에 기초하고 각국의 국가 법률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장려할 수 있다.

2. 보건의료 산업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공중 보건 정책 및 관리

나. 의료 및 제약 정책 및 관리

다. 병원 보건의료

라. 디지털 보건의료, 그리고

마. 보건의료 및 의료 장비의 신기술

3. 제1항에 언급된 당사국들은 다음을 통하여 보건의료 산업에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다.

가. 보건의료와 의료 및 제약 과학 분야에서의 인력 훈련

나. 제품 품질 개선, 기술 무역 등

다.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콘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전시회, 박람회 및 그 밖의 행사

라. 당사국들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마. 한쪽 당사국의 의료기관을 다른 쪽 당사국에서 홍보, 그리고

바. 보건의료 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협력